

Germany's Revised Packaging Law (July 2021)

독일의 개정된 포장재법(2021년 7월)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I. 서론

독일에서는 2021년 7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포장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순환경제 실행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음료 포장에 대한 일회용 PET병과 알루미늄 캔의 보증금제(Pfand)가 확대 적용된다. 테이크아웃부문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제공해야만 한다. 서비스나 배송용 포장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독일 포장재법 개정안은 2021년 7월 3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데, 다음에 중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II. 등록 요건 대폭 확대

지금까지 포장재법은 최종 소비자에 의해 폐기되는 상품의 포장을 유통자가 중앙포장재등재재단(ZSVR)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는 포장의 등록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판지 상자, 배송용 포장재, 완충 포장재, 라벨, 파렛트 등 거의 대부분의 포장재로 확대 적용된다.

III. 전자상거래 및 주문처리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강화

아마존(Amazon)과 같은 전자상거래 및 주문처리서비스 제공업체도 포장재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유통업체는 포장된 상품의 제조사가 중앙포장재등재재단(ZSVR)에 등록돼 있는지, 또한 듀얼시스템(Dual System)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특히 해외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만일에 상품의 포장이 듀얼시스템(Dual System)에 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IV. PET병 보증금제(Pfand) 대폭 확대

음료를 포장한 일회용 PET병이나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제가 모든 음료 포장재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일회용 빈 PET병의 수거를 높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일회용 PET병에 든 과일주스 또는 혼합 주류를 포장한 캔에는 보증금제(Pfand)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모든 일회용 음료수 포장재에 25센트의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포장은 전환기간을 부여해 2024년에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V. 제품 라벨링 부착 강화

음료수 컵, 물티슈, 위생용품, 담배 필터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VI.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또는 재활용 원료 비율 25%이상 함유

새 개정안은 일회용 포장재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과 음료 판매 부문에서는 고객에게 재

[사진 1] 포장에 표기된 보증금제(Pfand)와 재활용 원료 비율 예시



[자료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직접 촬영]

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대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굳이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해야만 할 경우에는 포장재법 개정안은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음료수 PET병은 생산과정 시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이상 함유해야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원료 비율이 30%로 상향되며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적용된다.

VII. 뚜껑 일체형 PET병 도입

2024년 7월 3일부터는 3리터 미만 용량의 PET병과 뚜껑은 일체형(tethered cap)인 경우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분리된 병마개가 쓰레기로 방치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VIII. 포장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포장재법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모든 제조업체가 포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중앙포장재등재재단(ZSVR)에 포함됐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포장재 제조사의 상품 포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신선 음식물 판매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포장의 최종 유통기업과 일반 최종 소비자와는 무관한 산업, 무역, 기업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의 제조업체도 등록을 해야만 한다.

등록 시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한 포장 유형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중앙 관할 기관에서는 시스템 참여 의무가 있는 포장재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회수, 재활용, 폐기에 대한 책임, 즉 비용 부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독일 포장재법 중요 변경사항 및 시행일 요약

변경사항	시행일
1. 등록 의무 확대	2022년 7월 1일
2. 전자상거래 및 주문처리서비스 제공업체 책임 강화	2022년 7월 1일
3. 일회용 PET병 생산 시 재활용 원료 포함 의무	2025년 1월 1일(25%), 2030년 1월 1일(30%)
3. 모든 음료수 PET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제 적용(Pfand)	2022년 1월 1일
3. 우유 및 유제품 포장 보증금제(Pfand)	2024년 1월 1일
4.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 부착	2021년 7월 3일
5. 테이크아웃,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	2023년 1월 1일
6. 뚜껑 일체형 PET병 도입	2024년 7월 3일


[자료 : 연방 환경청(Umweltbundesamt)/ 포장재법 개정(Verpack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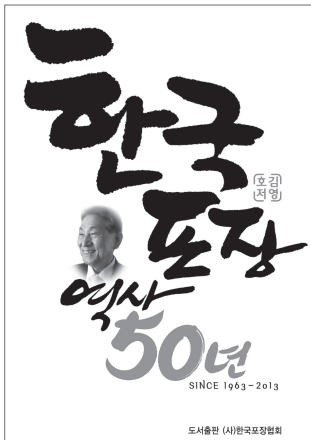
IX. 독일에 지사가 없는 해외 제조 및 유통기업 공인대리인 선임 가능

포장 등록 대상 제조업체이지만 독일에 지사가 없는 외국 제조업체는 자율적으로 공인대리인을 선임하여 포장재법 관련 등록과 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택형이다.

X. 시사점

포장은 상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중요하며, 아름다운 포장은 상품 홍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용 후에는 폐기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독일 포장재법은 중앙포장재등재재단(ZSVR)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 포장재법 개정안은 포장의 등록 범위와 책임을 확대해 포장재의 재활용·수거·폐기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송계숙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독일에 지사가 없거나 포장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은 독일 내 공인 대리인을 선임해 등록과 의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독일 진출 국내 제조 및 유통기업은 독일 포장재법을 잘 준수해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적 안내

한국 포장 역사 50년

국내 포장기술사 1호, 김영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이 자서전 “한국포장역사 50년”을 발간했다.

국내 포장 역사의 단편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이 책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포장 종사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한편, 포장업에 종사하는 후배들이 어떻게 포장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12,000원

· 구입 문의

TEL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